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 8월 6일(목)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개년 계획
30년의 성장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 장(☎2110-1520)
임종철 주무관(☎2110-1526)

제공일: 2015. 8. 6.(목)

스마트폰 앱,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 8월 6일,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 앱 마켓에 등록, 앱 서비스 이용 및 탈퇴 과정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보다 쉽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스마트폰 앱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사업자가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84%를 넘었으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이용도 국민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앱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접근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스마트폰 앱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8월 6일부터 시행되며, 9월에는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 :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 앱 권한 설정 개념도 >



※ OS사업자 : 스마트폰에서 앱이 동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예: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 앱 개발자 : OS사업자가 제공한 운영체제에 맞추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

※ 앱 마켓 :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예: 구글플레이 등)

※ 앱 서비스 제공자 : 앱 개발자가 설계한 앱을 앱 마켓에 올려 이용자에게 서비스(예: SKP(T맵) 등)

먼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이하 “앱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OS) 사업자(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앱 개발자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환경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앱 권한이 설정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되어 전송되는 것이 아니

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집되어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또한, 운영체제 사업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앱 접근 권한 설정의 목적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 접근 권한 별 목적 안내(예시) >

접근 권한	서비스 목적 안내
위치	SNS 위치 공유, 주변 맛집 찾기
카메라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사진촬영 즉시 업로드
마이크로폰	보이스 특 기능 이용
연락처	SNS 친구추가, 연락처 공유 가능

< 2. 앱 마켓 등록 단계 > :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둘째, 앱 마켓에서 이용자가 앱을 내려 받기 전에 앱 권한 설정,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맞추어 개발한 앱을 등록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하여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마련하도록 하여 앱 이용에서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 앱 마켓의 앱 내려받기 화면 예시 >

예시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개발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웹페이지 방문 : http://앱 사업자 URL/  ② 이용약관 : http://이용약관 URL/  ③ 개인정보취급방침 : http://취급방침 URL/  ④ 앱 권한 정보 보기 : http://앱권한 URL/  > 과도한 개인정보 취급 앱 > 무적합한 콘텐츠 신고  ⑤ 앱 마켓 신고 : http://앱마켓 신고 URL/ 	<p>① (웹페이지 방문) 앱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p> <p>② (이용약관) 이용자가 앱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 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 ※ 앱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p> <p>③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를 제공</p> <p>④ (앱 권한 정보보기) 이용자 단말기 정보에 대한 앱 권한 정보를 제공</p> <p>⑤ (앱 마켓에 신고하기)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등 앱 마켓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p>

<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 :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셋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구성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화면과는 달리 작은 화면으로 인해 사업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필수동의 사항을 안내하기가 어려웠고, 이용자도 번거로운 필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동의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동의

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앱 탈퇴메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임 1.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전문. 끝.

붙임 1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 ◇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앱 개발환경(OS사, 앱 마켓 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 조성
- ◇ 앱 권한 및 동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

①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이하 '앱 접근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

- (운영체제(OS) 사업자) 앱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앱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 앱이 이용자와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여 이용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해당 앱을 내려받는 시점에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15.8월 이후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하도록 개편 예정
 - 이용자에게 알리는 앱 접근권한 설정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 (예시) 위치 : SNS 위치 공유·주변 맛집 찾기, 연락처 : SNS 친구추가·연락처 공유 등
-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함
 - 이용자가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허용된 권한 관련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 후 수집(전송)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여야 함

- ※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
- 앱 접근권한 설정 이후에도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 현재 애플 iOS의 경우 “설정/개인정보보호 메뉴”를 통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사후 변경 허용 안됨 (다만, '15. 8월 이후 허용 예정)

② [앱 마켓 등록 단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 앱 마켓 등록 시 앱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앱 마켓)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등록 시 “앱 접근권한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등록 후 앱 접근권한 관련으로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확인 및 자체 심사를 거쳐 개선요청·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예시	설명
 <p>앱 아이콘</p> <p>앱(Application) 명 앱(Application) 사업자명 설치</p> <p>앱(Application) 스크린샷</p> <p>개발정보</p> <p>① 웹페이지 방문 : http://앱 사업자 URL/ ② 이용약관 : http://이용약관 URL/ ③ 개인정보취급방침 : http://취급방침 URL/ ④ 앱 권한 정보 보기 : http://앱권한 URL/</p> <p>➤ 과도한 개인정보 취급 앱 ➤ 무적합한 콘텐츠 신고 ⑤ 앱 마켓 신고 : http://앱마켓 신고 URL/</p>	<p>① (웹페이지 방문) 앱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p> <p>② (이용약관) 이용자가 앱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 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 ※ 앱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p> <p>③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를 제공</p> <p>④ (앱 접근권한 정보보기) 이용자 단말기 정보에 대한 앱 접근권한 정보를 제공</p> <p>⑤ (앱 마켓에 신고하기)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등 앱 마켓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p>

-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앱 마켓 등록 전에 개발된 앱이 “앱 접근 권한 설정”,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 시 이용자 고지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③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개선

-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 등 필수동의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구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마케팅 이용**” 등 선택동의 사항은 필수동의 사항과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선택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 제3자 제공 동의 강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5.12.23. 이후에는 3천만원 이하)
 - ** 마케팅 이용 동의 강제 등 최소수집 원칙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앱 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앱 실행 첫 화면 등에 배치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함
 - 이용자가 스마트폰 상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회원탈퇴 등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사업자)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관련 정보 중 실제 삭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